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14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김영환·진성준·오기형

모경종・김남근・조인철

오세희 • 복기왕 • 채현일

박지혜 · 정일영 · 안도걸

이수진 · 김성회 · 박해철

김 윤·조정식·강선우

김남희 · 정성호 · 정태호

최기상 • 민형배 • 황명선

전현희 · 박범계 · 김성환

허 영 • 이기헌 • 박희승

김영진 · 김기표 · 황정아

추미애 • 이재명 의원

(35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	류) ①		
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			
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42		
	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		
<u>12.</u> (생 략)	<u>13.</u>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